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62 발의연월일: 2020. 11. 6.

발 의 자 : 남인순 · 이상헌 · 박완주

김회재 · 윤재갑 · 홍성국

오영환 · 최혜영 · 김상희

강선우 · 노웅래 · 이성만

유준병 • 허종식 • 김승원

양정숙 의원(16인)

제안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등을 하는 도시공원·공원시설이나 신축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자가 신축하는 시설 중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다수의 인증기관이 존재하고 인증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인증업무의 관리·지원 등을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인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을 받는 시설에 대하여 인 세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인증운영기관의 설치 근거 및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뿐 아니라 전부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 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신축 등을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10조의2제3항).
- 나. 인증기관 관리·지원, 인증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가 인증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할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10 신설).
- 다.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11 및 제10조의12 신설).

법률 제 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6739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제2호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개축 또는 재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인증 비용의 부담, 그 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의10부터 제10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10(인증운영기관의 설치) ① 국가는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할 수있다.

- 1. 인증기관 관리 · 지원
- 2. 인증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 3. 인증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 4. 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 5. 그 밖에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업무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설치·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11(인증수수료) ① 시설주는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 및 예비인증 신청,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연장 신청(이하 "인증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인증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인증 신청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수수료의 납부 방법·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12(인증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등을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아 정 법률 제16739호 법률 제16739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 ② (생 략) 인증)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u>「공공기관의 운영에</u> 관한 법 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 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 률 | 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 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 는 재축하는-----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 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인증기관지정 기준·절차, 인증 비용의부담,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신 설>

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개축 또는 재축
④ (현행과 같음)
(134 Ea)
<u>그 밖에</u>
제10조의10(인증운영기관의 설치)
① 국가는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1. 인증기관 관리ㆍ지원

2. 인증 관련 연구·개발 및 기

3. 인증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

4. 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술 보급

및 운영

<신 설>

교육

- 5. 그 밖에 인증 활성화를 위하 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인증 운영기관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 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 의 설치·운영 및 제2항에 따 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11(인증수수료) ① 시설 주는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 및 예비인증 신청,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연 장 신청(이하 "인증 신청등"이 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 0조의2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 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시 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인 증 신청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 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② 수수료의 납부 방법·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 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12(인증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
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
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
할 수 있다.